

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1. 19(목) 평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장)
-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- 상정일자 : 2016. 02. 01(월) 제21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)

-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.
- 표준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업종 및 누진단계를 조정하고,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, 표준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업종 및 누진단계를 조정하고,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1조제2항은 계량기 동파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삭제
 - 안 제23조제1항 “별표1”은 업종 통합 및 누진단계 조정과 사용요금에 대해 명시
 - 안 제24조제1항 “별표3”은 업종 구분을 명시한 내용임.

○ 본 조례안 검토 결과

- 계량기 동파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표준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업종 및 누진단계를 조정하고,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

2014년도 결산결과

- m³당 생산원가는 4,119원이고,
- m³당 평균요금은 1,215원으로
- 요금현실화율은 29.5%이며, 요금인상요인은 239%로 확인되었음.
-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, 요금현실화율은 미흡하여, 공기업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타 지자체보다 비싼 수도요금 납부자인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홍보와 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수도사용료 요율표 가정용 누진단계 중 0-10톤 사용자의 경우
요금 증가폭이 크므로, 수도요금 누진단계를 변경 없이
당초 6단계에서 인상율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,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제23조 수도사용료 요율표

| 업종 \ 요율 | 사용량(톤) | 사용요금(원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
| 가정용 | 0~20 | 610 | |
| | 21~30 | 1,100 | |
| | 31이상 | 1,670 | |
| 일반용 | 0~50 | 1,300 | |
| | 51~100 | 2,070 | |
| | 101~300 | 2,610 | |
| | 301이상 | 3,020 | |
| 욕탕용 | 0~200 | 1,880 | |
| | 201~300 | 2,460 | |
| | 301~500 | 2,910 | |
| | 501이상 | 3,930 | |
| 산업용 | | 1,490 | |

[별표 3] 제24조 업종 구분표

| 업종별 | 구분내용 |
|-----|--|
| 가정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○ 담배, 연탄, 양곡, 지물포, 철물, 문방구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사 사무소, 인장업, 행정사서업, 수예업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으로 10㎡ 미만의 소규모가게 ○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(보육원, 영아원, 경로당, 장애인, 노인 등) 및 국가유공자 단체 |
| 일반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○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○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|
| 욕탕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공중위생관리법」을 적용 받는 목욕장업 ○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(연면적 803㎡이하, 욕실,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㎡이하)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 시술소 |
| 산업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|